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0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태선・이기헌・권칠승

정준호 · 김영배 · 장철민

김태년 • 한민수 • 김준형

김성회・박 정・이용우

최기상 · 김주영 · 맹성규

이훈기 • 박균택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,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,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.

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 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(안 제60조제6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6항제3호 중 "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"을 "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"으로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	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	6
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	
으로 본다.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	3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	
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	<u>육아휴직 또</u>
로 휴업한 기간	는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
	따른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
	<u>기간</u>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